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01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6구단4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교회
피 고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6. 7. 13.
판 결 선 고	2016. 8.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5,556,490원, 농어촌특별세 651,280원, 지방교육세 1,302,5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기독교 복음에 의한 예배, 선교 등을 사업목적으로 한 비법인사단으로서 옛 명칭은 B교회였다가 2013. 1. 20.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원고는 2012. 7. 29.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01

C로부터 [redacted]시 [redacted]구 D 주상복합상가동 204호, 205호, 206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매대금은 270,000,000원, 잔금지급 및 인도일은 2012. 9. 17.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9. 19. 원고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9. 19. 피고에게, 종교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등에 따른 면제신청을 하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이하 '취득세 등'이라고 한다)을 면제 받았다.

다. 피고는 2014. 12.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4. 7.경 이 사건 부동산을 E교회 대표자 F에게 보증금 5,000만 원에 임대하였고 이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는 이유로, 청구취지 기재 세금을 부과하였다(이하 위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이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2.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0. 1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는 선교지로 장기출장을 가게되어 평소 친하게 지내던 F을 담임목사로 초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01

빙하였으며, 서류상 근거를 만들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F으로부터 감사헌금조로 5,000만 원을 받았을 뿐,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한 것이 아니다.

(2) 요건 비해당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2년 이상 종교시설로 사용하였다.

(3) 절차위반

피고는 원고에게 아무런 연락도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5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 기계장비(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01

5.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다.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2014. 6. 10. E교회의 대표자인 F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5,000만 원, 차임은 월 100만 원, 임대기간은 2014. 7. 25.부터 24개월간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그 즈음 F으로부터 5,000만 원을 수령하였으며 F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E교회라는 간판을 달고 자신을 담임목사로 하여 예배당 및 교육관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다가 원고가 이 법정에서 위 5,000만 원에 대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함으로써 종교 목적으로 '자신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요건 비해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잔금지급 및 인도일을 2012. 9. 17.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9. 19.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4. 6.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01

10. F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25.을 개시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데,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과 임대일의 간격을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지 2년이 안된 시점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절차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전인 2014. 9. 4.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받아 2014. 10. 8.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16조가 규정한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redacted]